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위원인 학부모가”를 “학부모위원이”로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”을 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1조제1항”을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시설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11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이 소속 직원, 관련 기관의 공무 원,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 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의 성별을 고려하 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지역 위원회가 설치되는 교육지원청 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의 학교운영위원회 <u>위원인</u> 학부 <u>모가</u>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학부모위원이</u>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원의 해임·해촉) 교육 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 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	제13조(위원의 해임·해촉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 <u>원인</u>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 <u>회</u>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실한 경 우	4. ----- <u>학</u> <u>부모위원</u> ----- -----

5.·6. (생 략) 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9조제2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”이란 「<u>화학물질관리법</u>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.	5.·6. (현행과 같음) 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「<u>화</u> ----- <u>학물질관리법</u>」 제23조제4항-- -----.
---	---